

의안번호	제 10 호	의 결 사 항
의결연월일	2008. 03. . (제 회)	

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8. 03. 26.

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0호
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08. 03. 26.
제출자 : 총무위원장

1. 제안이유

의회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, 상임위원회별 역할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추가하여 설치하고자 함
(안 제2조).

○ 의회운영위원회 : 5명 이내

나. 의회사무과의 직무와 그 소관을 총무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자 함(안 제3조).

다.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, 제62조

나. 예산조치 : 2008년도 당초예산에 기획보(9,000천원)

다. 합의 : 재정부담에 따른 예산부서와의 의견 청취

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제1호와 제2호”를 각각 “제2호와 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

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의회사무과”를 삭제하고, 같은 항 “제1호와 제2호”를 각각 “제2호와 제3호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

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- 나.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(이하 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)이 된다.
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1 ~ 2 (생략)</p>	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----- -----</p> <p><u>1.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</u></p> <p>2 ~ 3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</p>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<u>1. (생략)</u></p> <p>가. <u>의회사무과, 기획감사실</u>, 종합민원실, 행정과, 재무과, 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 과. 문화관광과. 전략사업추진단, 보건소,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.</p> <p><u>2. (생략)</u>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.</p> <p><u>1. 의회운영위원회</u></p> <p><u>가.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나. 의회사무과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<u>다.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(현행 제1호와 같음)</u></p> <p>가. <u>기획감사실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상임위원회 위원)</p> <p>①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(이하 "상임위원"이라 한다)이 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상임위원회 위원)</p> <p>①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(이하 "상임위원"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